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발명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9164호, '23.1.3. 공포, '23.7.4.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 사항인 '발명 등의 평가 기준(법 제31조의2제1항)', '평가기법의 개발·보급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법 제31조의3제3항)',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 절차 등(법 제31조의4)', '평가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법 제31조의5)', '평가관리센터의 구성·운영·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법 제31조의6)' 등을 반영하고, 그 밖에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률 개정에서 반영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수립 및 평가기법의 개발·보급,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3 신설)

나.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의4 내지 제14조의6 신설)

- 1) 타당성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 이해관계인을 규정하고, 조사착수에 대한 통지, 의견진술기회 부여, 조사결과 통지 등의 타당성조사 절차에 대해 규정함(안 제14조의4 신설)

2) 국가 등에게 타당성조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함(안 제14조의5 신설)

3) 표본조사의 종류,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4조의6 신설)

다.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규정(안 제14조의7 신설)

1) 평가기관이 평가정보체계에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등록하고, 특허청장이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함

2) 등록제외가능 사유 및 평가결과가 활용되는 사유를 규정함

라. 평가관리센터의 구성·운영·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의8 신설)

마.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에 ‘평가기준을 위반하여 발명 등의 평가를 수행한 경우’를 추가(별표 7 개정)

바. 과태료 부과 기준에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추가(별표 11 개정)

사. 용어 정비 및 위탁업무 추가 (안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9조)

1)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에 따라 용어를 반영하고,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가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안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9조)

2) 발명진흥회 및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 (안 제29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발명의 평가”를 “발명 등의 평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 (이하 “사업화지원센터”라 한다)”로, “산업재산권의 알선업무”를 “법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알선·중개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각각 “사업화지원센터”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발명의 평가기관”을 “발명 등의 평가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발명의 평가업무”를 “발명 등의 평가 업무”로, “전문인력”을 “평가 전문인력”으로 하며, 같은 호 나 목 중 “발명의 평가”를 “발명 등의 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발명의 평가업무”를 각각 “발명 등의 평가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평가대상기술, 평가범위”를 “발명 등의 평가의 대상 및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요청한”을 “의뢰한”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발명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발명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4호”를 “법 제29조제1항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

지 중 중 “발명평가”를 “발명 등의 평가”로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발명 등의 평가 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명 등의 평가기관의 업무규범
2. 발명 등의 평가 원칙
3.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등 평가요인 분석을 통한 평가결과 산출
4. 제3호의 평가요인 분석을 반영한 평가 결과서 작성
5.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3(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① 특허청장은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평가기법의 개발·보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평가기법의 개발·보급 관련 조사·연구
2. 평가기법에 활용되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및 보급
3. 평가기법에 관한 가이드라인·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
4. 평가기법의 개발·보급에 필요한 지원
5. 그 밖에 특허청장이 평가기법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허청장은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평가기법의 활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평가기법을 활용한 평가모델 및 평가시스템 연구·개발
2. 평가기법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3. 평가기법 활용을 위한 교육·홍보
4. 평가기법의 우수활용사례 발굴 및 활용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특허청장이 평가기법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특허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의4(타당성조사의 절차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28조제4항의 평가기관이 실시한 발명 등의 평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

1. 특허청장이 발명 등의 평가결과가 부실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등 또는 이해관계인이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② 법 제31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③ 법 제31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

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한 자

2.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해당 평가 결과를 제공받는 자

④ 특허청장은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발명 등의 평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

2. 이해관계인이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것으로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가. 제재처분,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나. 법 제2조제11호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 등의 평가 대상의 출원이 해당 조사의 요청 또는 완료 전에 무효, 취하, 포기되거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다. 법 제2조제11호 가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 등의 평가 대상의 권리가 해당 조사의 요청 또는 완료 전에 무효, 등록취소, 포기, 존속기간의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해 소멸된 경우

라. 법 제2조제11호 나목에 해당하는 발명 등의 평가대상인 영업비밀이 해당 조사의 요청 또는 종결 전에 영업비밀성을 상실한 경우

4. 타당성조사를 요청하는 이유 및 타당성 결여를 주장하는 근거가 불
명확한 경우

5. 이해관계인이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것으로서 평가가 완료된 후 3년
이 경과한 경우

⑤ 특허청장은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에 착수한 경우
에는 착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평가기관, 해당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한 자 및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
야 한다.

1. 타당성조사의 사유

2. 타당성조사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과 의견을 제출하
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3. 타당성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법 제31조의6에 따른 평가관리센터의
주소 및 연락처

4. 그 밖에 특허청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타당성조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평가기관, 해당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한 자 및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
내에 특허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⑦ 특허청장은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경우
에는 해당 평가기관, 해당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한 자 및 타당성조사
를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14조의5(타당성조사 결과의 제공) 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에 필요한 경우
2. 타당성조사 결과가 요청한 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의6(표본조사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31조의4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1.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
2. 우선추출방식의 표본조사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표본조사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최근 2년 이내에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 발명 등의 평가의 부실이 발생한 분야
2. 제1항제1호의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령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분야
3. 그 밖에 발명 등의 평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본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7(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법 제31조의5제2항 본문

에 따라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 결과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명 등의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평가관리센터가 운영하는 평가정보체계에 전자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기관에게 평가정보체계에 등록된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정·보완된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평가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보가 있는 경우 평가기관은 이를 제외하고 평가정보체계에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해당 정보를 제외하고 등록하는 사유를 평가정보체계 등록기간 내에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의해 제3자 제공이 금지·제한된 정보
2. 다른 법령이나 판결 등에 의해 정보의 제출 또는 공유 등이 금지된 정보
3.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④ 법 제31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2. 법 제31조의4제4항에 따른 표본조사
3. 법 제31조의5제2항에 따른 특허청장 또는 평가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출

4. 법 제28조에 따른 발명의 평가기관의 지정
 5. 법 제29조에 따른 평가기관에 대한 지원
 6. 법 제30조에 따른 평가수수료의 지원
 7. 법 제31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8. 그 밖에 발명 등의 평가 관련 정책의 운용을 위한 필요한 사항
- ⑤ 평가정보체계에 정보를 등록하고 확인하는 세부적인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8(평가관리센터 구성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평가관리센터를 한국발명진흥회에 둔다.

② 평가관리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한국발명진흥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③ 한국발명진흥회는 평가관리센터의 사업수행 실적을 다음해 3월 말까지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한국발명진흥회는 법 제31조의4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적절한 인원으로 구성되는 발명 등의 평가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법 제31조의6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수요의 조사 및 분석
2.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3.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
4. 평가기법의 활용 촉진
5. 발명 등의 평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 관련 심의위원회 운영
7.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 관련 사례집 발간
8.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 관련 교육
9.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 등의 평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평가관리센터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의 제목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사업화지원센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사업화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발명의 평가기관”을 “발명 등의 평가기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사업화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사업화지원센터”로, 같은 조 제4항 중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각각 “사업화지원센터”로 한다.

제29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지정 요건 검토에 관한 업무
7. 법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

제14조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 7 제2호 나목 다음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31조의2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발명 등의 평가를 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3호	경고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	---------------	----	--------------	--------------	-------

제30조와 관련하여 별표 11 제2호 사목 다음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법 제3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	50	100	150
--	-----------	----	-----	-----

별지 제3호의5서식의 제목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를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3호의5서식 중 “발명의 평가기관”을 “발명 등의 평가기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나목 중 “발명의 평가기관”을 “발명 등의 평가기관”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대 상)	제2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대 상)	제2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대 상)	제2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대 상)	제2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대 상)
1. ~ 7. (생략)	1. ~ 7. (생략)	1. ~ 7. (생략)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u>발명의 평가</u> 지원	8. <u>발명 등의 평가</u> 지원	8. <u>발명 등의 평가</u> 지원	8. <u>발명 등의 평가</u> 지원	8. <u>발명 등의 평가</u> 지원
제10조(출연금의 사용) ①법 제34 조에 따른 <u>특허기술사업화알선 센터</u> 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u>산업재산권의 알선업무</u> 를 위한 사업에 따르는 비용에만 사용하 야 한다.	제10조(출연금의 사용) ①----- ----- <u>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 터(이하 “사업화지원센터”라 한 다)</u> ----- ----- ----- <u>법 제2 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알선·중개업무</u> ----- -----.	제10조(출연금의 사용) ①----- ----- <u>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 터(이하 “사업화지원센터”라 한 다)</u> ----- ----- ----- <u>법 제2 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알선·중개업무</u> ----- -----.	제10조(출연금의 사용) ①----- ----- <u>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 터(이하 “사업화지원센터”라 한 다)</u> ----- ----- ----- <u>법 제2 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알선·중개업무</u> ----- -----.	제10조(출연금의 사용) ①----- ----- <u>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 터(이하 “사업화지원센터”라 한 다)</u> ----- ----- ----- <u>법 제2 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알선·중개업무</u> ----- -----.
②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u>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u> 는 별도 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 리해야 한다.	②----- <u>사업화지원센터</u> ----- ----- -----.	②----- <u>사업화지원센터</u> ----- ----- -----.	②----- <u>사업화지원센터</u> ----- ----- -----.	②----- <u>사업화지원센터</u> ----- ----- -----.
③ <u>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u> 는 제 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실적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 성하여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특 허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u>사업화지원센터</u> ----- ----- ----- ----- -----.	③ <u>사업화지원센터</u> ----- ----- ----- ----- -----.	③ <u>사업화지원센터</u> ----- ----- ----- ----- -----.	③ <u>사업화지원센터</u> ----- ----- ----- ----- -----.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u>발명의 평</u>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 ----- <u>발명 등의 평가기</u>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 ----- <u>발명 등의 평가기</u>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 ----- <u>발명 등의 평가기</u>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 ----- <u>발명 등의 평가기</u>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3. <u>발명의 평가업무</u> 수행에 필요한 평가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할 것 ③ (생략) ④ 특허청장과 평가기관의 장이 법 제28조제5항제2호에 따라 평가수수료의 협의를 할 때에는 <u>평가대상기술, 평가범위, 평가기간</u>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u>요청한</u> 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3. <u>발명 등의 평가 업무</u>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발명 등의 평가의 대상 및 범위,</u> -----. ⑤ ----- -----<u>의뢰한</u> ----- ----- ----- ----- -----.
제13조(<u>발명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u>) 법 제2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u>발명평가</u> 기법의 개발 및 보급 2. <u>발명평가</u> 관련 교재의 개발 및 보급 3. <u>발명평가</u> 관련 국내외 학술	제13조(<u>발명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u>) 법 제29조제1항제7호----- -----. 1. <u>발명 등의 평가</u> ----- -- 2. <u>발명 등의 평가</u> ----- ----- 3. <u>발명 등의 평가</u> -----

대회 개최 4. <u>발명평가</u>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특허청장이 <u>발명평가</u>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u>발명 등의 평가</u> ----- ----- 5. ----- <u>발명 등의 평가</u> ----- -----
<u><신 설></u>	<u>제14조의2(발명 등의 평가 기준)</u> <u>①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발명 등의 평가기관의 업무 규범</u> <u>2. 발명 등의 평가 원칙</u> <u>3.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등 평가요인 분석을 통한 평가결과 산출</u> <u>4. 제3호의 평가요인 분석을 반영한 평가 결과서 작성</u> <u>5.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u> <u>② 제1항 각 호의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u>
<u><신 설></u>	<u>제14조의3(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u> ① 특허청장은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u>평가기법의</u>

	<u>개발·보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u> <u>1. 평가기법의 개발·보급 관련 조사·연구</u> <u>2. 평가기법에 활용되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및 보급</u> <u>3. 평가기법에 관한 가이드라인·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u> <u>4. 평가기법의 개발·보급에 필요한 지원</u> <u>5. 그 밖에 특허청장이 평가기법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② 특허청장은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평가기법의 활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u> <u>1. 평가기법을 활용한 평가모델 및 평가시스템 연구·개발</u> <u>2. 평가기법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u> <u>3. 평가기법 활용을 위한 교육·홍보</u> <u>4. 평가기법의 우수활용사례 발굴 및 활용을 위한 지원</u> <u>5. 그 밖에 특허청장이 평가기</u>
--	---

	<u>법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③ 특허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14조의4(타당성조사의 절차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28조제4항의 평가기관이 실시한 발명 등의 평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u> <u>1. 특허청장이 발명 등의 평가 결과가 부실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u>2.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등 또는 이해관계인이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u> <u>② 법 제31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u>

③ 법 제31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한 자
2.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해당 평가 결과를 제공받는 자

④ 특허청장은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발명 등의 평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
2. 이해관계인이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것으로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 가. 제재처분,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 나. 법 제2조제11호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 등

의 평가 대상의 출원이 해당
조사의 요청 또는 완료 전
에 무효, 취하, 포기되거나 거
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다. 법 제2조제11호 가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발명 등의 평가 대상의
권리가 해당 조사의 요청
또는 완료 전에 무효, 등록
취소, 포기, 존속기간의 만
료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
해 소멸된 경우

라. 법 제2조제11호 나목에 해
당하는 발명 등의 평가 대
상인 영업비밀이 해당 조사
의 요청 또는 완료 전에 영
업비밀성을 상실한 경우

4. 타당성조사를 요청하는 이유
또는 타당성 결여를 주장하는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5. 이해관계인이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것으로서 평가가 완료
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⑤ 특허청장은 법 제31조의4제1
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에 해당 평가기관, 해당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한 자 및 타당성 조사를 요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타당성조사의 사유

2. 타당성조사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3. 타당성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법 제31조의6에 따른 평가관리센터의 주소 및 연락처

4. 그 밖에 특허청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타당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평가기관, 해당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한 자 및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⑦ 특허청장은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관, 해당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한 자 및

	<u>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u>
<u><신 설></u>	<u>제14조의5(타당성조사 결과의 제공) 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u> <u>1.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에 필요한 경우</u> <u>2. 타당성조사 결과가 요청한 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u> <u>3. 그 밖에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u>
<u><신 설></u>	<u>제14조의6(표본조사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31조의4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u> <u>1.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u> <u>2. 우선추출방식의 표본조사</u> <u>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표본조사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u> <u>1. 최근 2년 이내에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 발명 등의 평가의</u>

<신 설>

부실이 발생한 분야

2. 제1항제1호의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령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분야

3. 그 밖에 발명 등의 평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본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7(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법 제3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라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 결과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명 등의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평가관리센터가 운영하는 평가정보체계에 전자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기관에게 평가정보체계에 등록된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정·보완된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평가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보가 있는 경우 평가기관은 이를 제외하고 평가정보체계에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해당 정보를 제외하고 등록하는 사유를 평가정보체계 등록기간 내에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의
해 제3자 제공이 금지·제한된
정보

2. 다른 법령이나 판결 등에 의
해 정보의 제출 또는 공유 등
이 금지된 정보

3.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④ 법 제31조의5제3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2. <u>법 제31조의4제4항에 따른 표본조사</u> 3 <u>법 제31조의5제2항에 따른 특허청장 또는 평가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출</u> 4. <u>법 제28조에 따른 발명의 평가기관의 지정</u> 5. <u>법 제29조에 따른 평가기관에 대한 지원</u> 6. <u>법 제30조에 따른 평가수수료의 지원</u> 7. <u>법 제31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u> 8. <u>그 밖에 발명 등의 평가 관련 정책의 운용을 위한 필요한 사항</u> ⑤ <u>평가정보체계에 정보를 등록하고 확인하는 세부적인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u>
<u><신 설></u>	제14조의8(평가관리센터 구성 등) ① <u>특허청장은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평가관리센터를 한국발명진흥회에 둔다.</u> ② <u>평가관리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한국발명</u>

진흥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③ 한국발명진흥회는 평가관리 센터의 사업수행 실적을 다음해 3월 말까지 특허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④ 한국발명진흥회는 법 제31조의4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적절한 인원으로 구성되는 발명 등의 평가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법 제31조의6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수요의 조사 및 분석
2.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3.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
4. 평가기법의 활용 촉진
5. 발명 등의 평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u>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 관련 심의위원회 운영</u> 7. <u>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 관련 사례집 발간</u> 8. <u>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 관련 교육</u> 9. <u>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 등의 평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⑥ <u>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평가관리센터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의 정관으로 정한다.</u>
제18조(<u>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u>)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u>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u>를 두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법인 중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법인 가. (생략) 나.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u>발명의 평가기</u>	제18조(<u>사업화지원센터</u>) ① ----- ----- <u>사업화지원센터</u>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 ----- <u>발명 등의</u>

<u>관</u> 다. (생략) ② <u>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u>에는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u>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u>를 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중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된다. ③ <u>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u>를 둔 기관 또는 단체는 <u>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u>의 사업수행 실적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u>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u>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u>를 둔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u>평가기관</u> 다. (현행과 같음) ② <u>사업화지원센터</u>----- ----- <u>사업화지원센터</u>----- ----- ----- -----. ③ <u>사업화지원센터</u>----- ----- <u>사업화지원센터</u>----- ----- ----- -----. ④ ----- ----- <u>사업화지원센터</u>----- ----- <u>사업화지원센터</u>----- -----.
제29조(업무의 위탁) ① 특허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한다. 1. ~ 5. (생략) <u><신설></u>	제29조(업무의 위탁) ① ----- ----- ----- -----.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u>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지</u>

<u><신 설></u> ② 특허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u><신 설></u> 1. (생 략) 2. (생 략)	<u>정 요건 검토에 관한 업무</u> <u>7. 법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u> ② (현행과 같음) 1. <u>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 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u> 2. (현행 제1호와 같음) 3. (현행 제2호와 같음)
--	--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목적	설립 연월일	
	담당자성명	전화	
	이메일주소	팩스	

「발명진흥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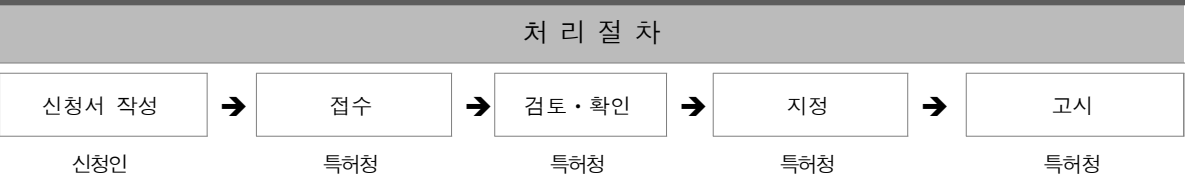
특허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 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의안 소관 부서명 >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연 락 처	042-481-5631